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신설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15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달리 이 법 상 위력·위계의 의한 성폭행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과거 판례 중 군인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상의 조항에 따라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피감독자간음·추행죄 신설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2조의9(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92조의10(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간강, 준강제추행),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은 군인 등¹⁾에 대하여

1)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형법과 군형법의 주요 성범죄 법정형 비교>

구 분	형법 제32장	군형법 제15장
강간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2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92조의7,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	제301조의2,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2조의8,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등 치사	제301조의2,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92조의8,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군로역인 군인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해당 조문은 군대 내 여성 군인의 증가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라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내 성폭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됨에 따라 2009년에 도입되었음.

□ 그러나 최근까지도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군내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 중에서 위계·위력으로써 하급자를 간음·추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군인 등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3조²⁾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0조³⁾을 적용하며, 동 규정에서는 간음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행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인이 하급자를 위계·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하는 경우 일반인 대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간음죄의

2)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임. 군인 간 성범죄는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범해지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는 군 기강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계·위력으로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벌칙 규정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상관”⁴⁾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준상관(상위 계급자 및 상위 서열자)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간음·추행의 대상인 “하급자”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하급자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형량을 각각 10년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이 범하는 위계·위력에

4)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의한 간음·추행죄를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수준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이나, 법체계의 균형성,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벌 수준과 법정형의 종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현행 규정과의 형량 비교 >

구 분	형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u>10년 이하의 징역</u> 에 처한다.		제92조의9(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u>10년 이하의 징역</u> 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제92조의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u> 에 처한다.

- 구체적으로 보면, ①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한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이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② 군인이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간음·추행죄를 범한 경우⁵⁾와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국방부는 군형법에서 피감독자간음·추행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과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비례원칙 측면 및 타법률과의 형벌체계상 균형성·형평성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5)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부는 군대 내 성폭력범죄를 엄단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에는 '하급자'의 개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형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보호·감독 관계를 법문에 직접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하급자'라는 표현만으로는 보호·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